

의안번호
제1394호

검 토 보 고 서

1. 규칙명

: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

2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일 : 2017. 9. 27.(금)
- 나. 제 출 자 : 김경환 의원 외 9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29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0. 11.(수)

3. 제안이유

-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규칙 안 구성 : 제5장 제18조로 구성
- 나. 제1장 총칙, 안 제1조~안 제2조, 규칙의 목적 및 용어 정의
- 다. 제2장 구성, 안 제3조~안 제5조, 위원정수, 소위원회 구성 등
- 라. 제3장 회의운영, 안 제6조~안 제10조
 - 개회 통지, 의견청취, 제척과 회피, 심사기간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- 마. 제4장 심문 및 변명 등, 안 제11조~안 제15조
 - 심사대상의원 출석요구, 발언 및 변명, 서류 등 제출, 통보 등
- 바. 제5장 보칙, 안 제16조~안 제18조, 비밀엄수, 준용, 운영규정

5. 제정 규칙안 : 별첨

6. 근거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, 제89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3항

7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7. 9. 27. ~ 10. 10.(14일간), 의견 없음.
- 나. 예산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대상 아님

8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,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89조에 따라,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사항 발생시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입법의 제반절차를 수행하였으며,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바람직한 규칙안이라 사료됨.

【관 련 법】

지방자치법

제57조(윤리특별위원회) **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**

제89조(징계에 관한 회의규칙) **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**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**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**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**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정
특별·광역시·구 의회 현황**

자치단체	규칙 제정 의회 (의원수)	조문 수	비고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		18	* 타 시·구 의회 규정과 차이점
서울특별시(13)	강동구(8), 강서구(9), 광진구(7), 동대문구(9), 동작구(7), 마포구(7), 서초구(9), 송파구(13), 성동구(의장, 당사자 제외전원), 용산구(7), 은평구(8), 중구(8), 중랑구(7)	10~12	[규칙 구성] 1. 목적 2. 구성 (3.소위원회) 3.위원회개회통지 4.심문(및 출석요구) 5.발언 및 변명 6.증빙서류 등의 제출 7.통 고 8.제척과 회피 (9.비밀누설금지) 9.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10.위 임 (11.기능) (12.준용)
부산광역시(13)	부산광역시(7), 강서구(5), 금정구(6), 기장군(5), 남구(5), 동구(6), 동래구(5), 부산진구(6), 서구(5), 영도구(5), 중구(5), 해운대구(7), 수영구(의장계의 전원),	9~11	
대구광역시(4)	남구(5), 달서구(9), 동구(5), 수성구(7)	11	
인천광역시(6)	계양구(6), 남구(7), 남동구(7), 부평구(8), 서구(7), 중구(6)	11~12	
대전광역시(3)	동구(7), 서구(7), 유성구(7)	10~12	
광주광역시(3)	광산구(7), 북구(5), 서구(7)	12~14	
울산광역시(3)	울산광역시(9), 남구(7), 울주군(7)	11	
세종특별자치시(1)	세종특별자치시(7)	10	

*** 타 시·구 의회 “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 규칙”과 차별되는 규정**

- 가. 안 제7조(의견청취 등)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의 의견 청취도 가능토록 한다.
- 나. 안 제9조(심사기간) 해당 의원의 조속한 신분안정을 위하여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내 연장 가능
- 다. 안 제15조(통보 등)제2항, 윤리심사 관계서류 제출은 사법기관의 제출명령에 한해서만 제출한다.